



0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Ⅰ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어린이집·가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장 친근하고 중요한 환경인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영유아를 잘 키운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보육교직원과 양육자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상호 지지적인 동반자 관계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양육자가 적절한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먼저 양육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및 어린이집 개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의논할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과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협력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양육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범위 등이 안내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개방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지만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더 중점을 두어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보육교직원이 양육자를 어린이집 운영의 협력자로서 인식한다면, 양육자는 보육교직원을 더욱 신뢰하며 어린이집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의 구조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개방과 양육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사, 원장,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어린이집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 2, 시행규칙 제26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과 수정사항 등은 모든 양육자에게 알리는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부모의 대표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표자 외의 양육자들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 및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공유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자와 어린이집은 두터운 신뢰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소통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개방된 보육환경 안에서 양육자-보육교직원-영유아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모두 행복하다.

어린이집과 가정은 공동양육자 관계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정이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 참여를 통해 양육자는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부모 자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원장, 보육교사, 양육자 간의 신뢰, 이해 및 배려가 바탕이 된 어린이집 개방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소통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정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양육자가 가지는 관심사에 따르는 정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보육과정에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이용자(양육자 및 영유아)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양육자 역시 원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을 개방함에 따라 양육자가 보육교직원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자는 원의 운영 방침이나 철학, 보육교직원의 노고 등이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대화로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양육자의 참여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부담을 느끼거나 양육자의 참여가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되기 보다는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다양한 방식의 양육자 참여 방법

의사결정자로 참여 / 양육자 참여활동을 통해, 양육자, 교사, 자원봉사자로서 참여 / 활동관찰과 면담 / 워크숍, 토론, 독서회 등을 통한 참여 / 대·소집단 모임 참여 / 알림장을 통한 소통 / 웹(web)기반을 통한 소통 / 도서관 운영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14조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0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Ⅰ 어린이집과 양육자는 상호 지지적인 동반자 관계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집과 양육자는 더 나은 영유아 발달 증진, 가장·어린이집 양육의 불연속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육교직원과 양육자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가 가지는 필요와 요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생활, 또래관계, 발달 상태와 같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는 영유아를 적절하게 보호, 양육할 수 있게 되며 영유아는 긍정적인 성장 발달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의사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먼저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여 보육교직원이 개별 영유아와 그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한 아이의 갑작스러운 퇴행 문제로 고민하던 교사가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얼마 전 태어난 동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교사는 아이의 퇴행이 단순한 발달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영유아에게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보육교직원과 양육자가 일관된 행동으로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개입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육자는 보육교직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에 대해 폭넓게 인식을 하게 되어 가정 이외 곳에서 영유아의 행동, 또래관계, 성격적인 측면 등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반응, 적절한 훈육 방법, 발달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안내받고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도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의 연계를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을 통해 영유아는 가정 및 어





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양육자 역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을 신뢰하게 되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Ⅰ 영유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유아에게 있어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의 당연한 역할이며 영유아의 권리 중 생존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영유아의 생활리듬이 안정적으로 지켜진다면 영유아는 반복적인 생활패턴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 같은 불필요한 심리적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안정된 생활리듬은 영유아의 습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습관화된 행동은 평생 지속되므로 기본생활의 습관 지도는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과 가정이 일체감을 가질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 영유아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의 틀은 영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은 물론 신체, 언어, 지능 발달 등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주도하는 인격형성의 바탕이 되므로 보육교직원과 양육자는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그 틀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예컨대, 늦게 잠이 들어 등원이 늦어진 영유아는 오전의 짧은 놀이 시간과 피곤함으로 짜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늦게 등원하게 된 영유아는 이미 놀이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형성하며 놀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원시간, 영유아를 인계하는 성인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은 영유아에게 불안감을 주며 보육교직원과 양육자 간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양육자가 영유아의 하원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줄 것이다.





Ⅰ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양육자에게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이 영유아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육은 공공의 영역 확장되어, 사회·국가·가정이 함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은 가정으로, 양육자의 역할은 영유아 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가 양육자와 맺는 긍정적인 애착관계는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가정 안에서 영유아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에게 ‘양육자 역할’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양육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에게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시기에 따르는 정보나 적절한 양육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 시기에 가정에서의 양육이 영유아의 성격과 정서, 사회성발달에 바탕이 됨을 알려준다면 양육자는 자신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 소통하며 알게 된 영유아의 개인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양육자와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영유아를 함께 잘 성장시키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보육교직원은 자신 뿐 아니라 양육자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역할을 나누고 이에 대해 안내하며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으로 영유아의 가족력, 가정환경, 최근의 중요한 사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책임을 다하여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영유아의 권리 존중은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14조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中



제26조(보호자 등에 의한 인권의 보장)

- ① 보호자는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양육의 지원)

- ①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0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I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관점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란 무엇일까?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유아 권리에 대한 관점은 영유아를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여겼던 과거에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자로서 인식하는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보육교직원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미 ‘아동인권’ 및 ‘영유아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은연중에 ‘아이들은 잘 모르니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배려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미답지 못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 해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해 큰 고민이나 갈등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보육과정이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보육교직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교육과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교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교육과 인식변화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의식에 대한 바른 철학을 확립시킬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교사교육만으로 보육교직원에게 내제된 영유아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 권리에 대한 자가 인식 점검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보육교직원-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어린이집의 환경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야말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 영유아는 독립적인 객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주체자이며 모두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할 존재이다.

“등원 할 때 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 우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출근을 해야 하고 아이는 울고...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심 때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아이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와 하루 일과를 보내는 동안 영유아의 권리 존중과 관련된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영유아 역시 보육교직원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과 권리에 보다 민감해야한다. 예컨대,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남녀의 차이는 영유아에게 '남녀의 차별'로 인식되어 질 수 있다. 색깔로 남녀를 구분하거나 남아와 여아의 행동이나 언어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아이기 때문에 '예쁘게 사뿐 사뿐' 걸어야 하고 남아이기 때문에 '쑹쑹'하고 멋지게 걸어야 한다.'는 것은 보육교직원의 편견일 뿐이다. 보육교직원은 일부 영유아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영유아만을 배려하지 않아야 하며 옷차림이나 외모에 따라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 또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를 주며, 영유아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적인 언급은 피해야한다. 영유아는 보육교직원의 평등한 대우를 통해 또래와의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를 피할 수 있고 평등의식과 더불어 권리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 보육교직원-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권리와 직결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바람직한 인권에 대한 철학, 성·장애·인종에 대한 평등 의식을 가지고 영유아 권리 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이러한 노력은 영유아를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으로서 성장하게 하게끔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 자란다.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헐뜯는 것을 배우고
 증오심을 키우며 자란 아이는 다투는 것을 배우고
 조롱받고 자란 아이는 수치심을 배우고
 치욕을 겪으며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은 아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정과 신뢰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삶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 '아시아의 인권교육' 중-

■ 다양한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활에서 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인이다. 보육교직원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영유아의 첫 사회적 관계 대상이며,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 다음으로 영유아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발달 전반에 중요한 모델이 되며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보육교직원이 'UN아동권리협약'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의 권리 존중 실천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에서 체결된 영유아와 청소년의 권리를 담은 국제 협약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으며 영유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담고 있다. 비록 영유아 권리 존중 교육에서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영유아 권리의 근간이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철학에 공감하고 원리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다수의 보육교직원은 매년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예방교육」을 받





음으로써 영유아 학대에 대해 알고 영유아의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신고해야할지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에서도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등의 영유아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받는데 이러한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영유아를 독립적이며 평등한 개체로 볼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인식개선을 도울 수 있다.

이 외에 원내 소모임, 자체 회의를 통해서도 권리 존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동인권민감성향상] 교육을 통해서도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권리교육으로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보육 교사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사례로 나온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저러지 말아야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이 다들 때 아무렇지 않게 ‘이러면 아기 반에 가야겠네.’ 라고 말해왔는데, 그게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어요. 또한 교육을 받고 나서는 팀티칭을 하는 교사와 영유아 간의 잘못된 상호작용을 서로 이야기해주기도 한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을 교육을 통해 알고 이를 나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보육업무가 끝나고 급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두 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실은 많이 힘들고 지쳐요.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이러한 경각심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 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준답니다.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는 게 교육의 큰 효과인거 같아요.”





“등원 시 아이는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으로 인해 유독 엄마와 떨어지기 힘든 날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제 그만 교사가 아이를 안고 안으로 데려가기를 바라는 엄마들도 계시죠. 교사는 아이와 엄마를 갈라놓고 억지로 데려가는 역할을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권리 교육을 들은 교사로서 아이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래 오늘 00가 등원하는 게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은 엄마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었구나.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라고 말하며 아이의 기분을 인정하고 공감을 하는 말을 해보았더니 아이가 교사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등원 시 분홍색 옷이나 치마를 입고 온 여자아이들을 보며 나름 반 편견 교육을 한다며 “예쁘다”라는 말 대신 “어머, 오늘 여성스럽게 입고 왔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것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권리교육을 받고 난 뒤 여성스럽다는 의미 자체가 교사가 생각하는 여성적인 의견을 내포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 옷 색이 너에게 잘 어울리는구나.”, “00는 그 색을 좋아하는구나.” 등으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예전 점심 식사 시간은 나와 아이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었어요. 먹기 싫어 거부하는 아이와 골로루 먹여보게 하려고 교사 간의 신경전은 매일 나를 지치게 했지요. 언제부턴가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지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권리 교육을 듣고 난 후 아이들과 점심 식사를 하다 문득 ‘아, 나도 입맛이 없거나 조금 먹고 싶은 날이 있는데 아이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늘 이 한 끼 식사를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다고 다시는 이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아닌데...’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식사를 하기 전 아이에게 얼마만큼 먹을지 먼저 물어보고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했더니 교사도 아이도 식사시간이 더 이상 힘든 시간이 아닌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영아반을 맡고 있는 교사인데 예전에는 기저귀 안을 살펴보거나 갈아야 할 때 ‘영아인데 그냥 보면 뭐 어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영아에게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영아에게 “선생님이 기저귀 안을 한 번 봐도 될까?”라고 의사를 물어봐요.”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한 감독 - 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 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 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6조(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 ①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어린이·청소년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 ①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어린이·청소년은 모든 종류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어린이·청소년은 유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③ 어린이·청소년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폭력피해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가정 및 교육환경,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그 회복)

- ① 시장은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청소년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어린이·청소년의 상황을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 어린이·청소년이나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를 받은 어린이·청소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 관련 의무사항 등 설명



●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 학 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①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②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초, 중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③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같은 법 제63조)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대 상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 등 조치사항

- 가.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조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 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짐
- 나.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tip 영유아권리 인식 내용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영유아 권리 인식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연번	영유아 권리 인식 내용
1	영유아는 어쩔 줄 모르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영유아는 부모와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 한, 부모와 함께 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3	영유아는 필요할 때 누군가 보살펴주고 영유아의 입장에 서서 말해 줄 수 있다.
4	영유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다.
5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영유아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한다.
6	영유아에게 옷, 음식, 살 곳이 주어져야 하며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8	영유아는 자신의 종교, 언어, 피부색, 종족과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
9	영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된다.
10	영유아는 놀이를 즐기고 상상을 할 수 있다.
11	영유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다.
12	영유아는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전쟁, 화재, 지진, 홍수 등) 즉시 도움을 받는다.
13	영유아는 태어나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름을 갖는다.
14	영유아는 자신만의 시간과 방해 받지 않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
15	영유아는 어린이 되기 전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16	영유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17	영유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18	영유아는 자기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다.
19	영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경청을 받는다.
20	영유아는 위험하거나 영유아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21	영유아는 나이가 들면 더 많고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22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과 건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23	영유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출처: 함께배워요 2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참고 수정

4) 보건복지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보건복지부.





0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I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곧 영유아의 인권 보호와도 직결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양육자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며 행복감 가지고 있을 때, 아이를 더욱 넓은 마음으로 보듬고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보육교직원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양육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육교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위해 마냥 희생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고 불행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환경임과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다. 하지만 단순한 ‘보육환경’ 혹은 ‘근로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있어 성장과 발달의 장이며, 인격과 사회성을 키우는 환경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에게는 행정적인 업무만 있는 곳이 아닌, 영유아의 정서·신체 발달을 촉진시키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환경인 것이다.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로 환경은 영유아의 안정된 보육환경 및 권리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근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먼저 보육교직원의 업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 준비, 일지 작성, 보육실 환경 조성, 위생을 위한 청소, 어린이집 업무 분장에 따르는 기타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 중 행사와 회의, 보수교육 그리고 각종 지도감독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심리·신체적 부담감 역시 갖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늘어난 근무시간은 점차 높은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며 이는 보육의 질을 낮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로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시간외 수당 지급 등 법적 근거 사항들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처하도록 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보육교직원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경험 할 수 있는 긴장이나 압박감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⁵⁾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 생활의 활력을 주고 업무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하거나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생활한다면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오래가지 않도록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스트레스가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신체증상이나 감정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노력하는 한, 인간은 실수한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스스로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여야 한다.⁶⁾ 필요하다면 동료 교사와 업무를 분담하거나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적절한 휴식과 취미, 욕구에 맞춘 교사 동호회 활동, 그리고 회식

5) 권미경, 이순형(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학회지, 14(1), 145-171. 수정 참조.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함께 배워요 1권 참고 수정





등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만약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변의 가까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인권상담 전화(TEL. 1644-9060)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해소 관련 상담 및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tip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보수교육, 병가 시에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 개발을 하도록 돕는다. 대체교사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인력을 무료로 지원하며 유휴인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자치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tip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서울시)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량은 줄이고 질은 높이기 위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다문화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1인을 채용 후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도록 하며 정해진 시간 외에 근로시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tip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tip 보육교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가 관련 법정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60조)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0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Ⅰ 어린이집 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된다.

매년 초, 보육교직원은 협의를 통해서 표준 보육과정 및 지역 특성, 국가 행사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계획안을 짜고 연령 간 교육수준 및 주제를 정한다. 또한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통해 원장과 교사 모두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각 반에서 다루어졌거나 계획 중인 교육내용을 논의하기도 하고 교사 개인의 업무 분장에 맞춰 전달 사항을 안내하기도 한다.

보육교직원은 함께 협력, 조력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존중받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자신의 권리 및 책임감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보육교직원의 직무만족도 및 교사 효능감으로 이어져 보육실 안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원장과 교사는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 보육내용 및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회의 시간에는 기본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학급 운영의 어려운 점, 교사 한 명이 지도하기 버거운 영유아와 관련된 내용, 부모 상담 시 힘든 점 등을 나누며 보육교직원 서로를 지지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사회의 외에도 교사 간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한 소그룹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이집의 업무 분장 시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통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주어진 역할 범위 내에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면 보육교직원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직원 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연습은 보육교직원의 삶 안에 녹아 ‘권리 존중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은 교실로도 이어져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Ⅰ 함께하는 보육환경이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보육현장에서 일과를 지내다 보면 아이들 간의 갈등 상황이나 교사와 아이들 간의 어려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각기 다른 발달 수준을 가진 영유아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한정된 수의 놀잇감을 공유하고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니 갈등 상황이 있게 된다. 때때로 보육교직원은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영유아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럴수록 교사는 영유아의 욕구와 감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며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며 과도한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보육환경에서 개별 영유아의 행동과 정서발달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영유아, 정상발달의 범주를 넘어서 임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유아, 교사와 원활히 협력되지 않는 양육자와 소통해야 하는 경우라면 교사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교실에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영유아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는 오롯이 보육실을 담당한 담임교사, 혼자만의 몫일까?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영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하거나 교사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함께 하는 보육환경’일 것이다. 원장,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인 회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자신의 업무 중 힘든 일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역할을 나누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로써 보육교사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 그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 있을 것이다. 동료 교사의 의견과 조언은 혹시라도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에 대해 범할 수 있는 오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간의 협의와 지원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 내 협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상담전화’를 통해 영유아





의 행동문제에 적절한 대처법, 바람직한 훈육방법, 교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사례

“현재 저는 3명이 교사가 함께 반을 맡고 있어요(반별 최대 정원제). 함께 일하며 서로의 역할을 보조해 주고 각자의 교수법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죠. 교사 3명이 항상 상의하고 되도록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무엇보다 혼자서는 느끼기 어려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고 컨디션 조절 등이 가능하여 아이들과 보다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어요. 혼자서 다수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나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교사회의 시간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건 가장 기본이자 굉장히 중요한 일 인 거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봄으로써 혼자 다수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선생님의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죠. 또 환경 구성을 바꿀 때, 여러 명의 교사가 함께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이로써 시간도 절약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환경꾸미기도 할 수 있어요. 이후 모든 교사와 원장이 반을 돌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이 때는 지적보다 칭찬을 해줌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中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상담전화 1644-9060

☑ 교사상담



친구를 자꾸
무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옆 반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아이를
자꾸 동생반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되나요?

☑ 부모상담



우리 아이, 편식이
심한데 어린이집에서
혼나는 건 아닐까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인권상담전문요원은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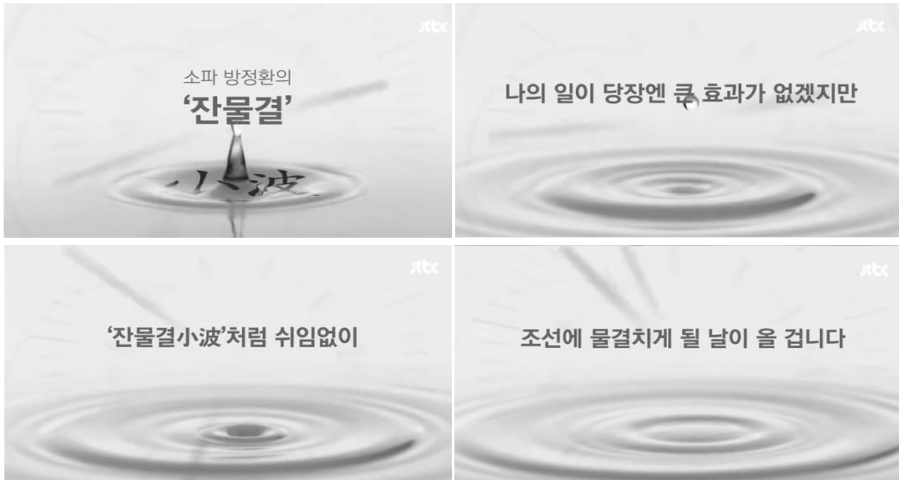
상담전화 | 1644-9060

- ☑ 어린이집에서 아동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잘 안될 때
- ☑ 바람직한 훈육방법을 알고 싶을 때
- ☑ 영유아와 긍정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 ☑ 부적응행동을 하는 영유아의 지도방법을 알고 싶을 때

☎ 상담권역 안내



아동학대 신고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세요



출처: JTBC 뉴스. 2015년 7월 23일

보육교직원은 본 체크리스트와 해설서를 통해 현재 몸담고 있는 보육환경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존중되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인식, 그리고 영유아와 주고 받는 크고 작은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가지는 반성적 성찰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보육교직원이 지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물결처럼 쉬임 없이 영유아의 인권에 대해 노력한다면 분명 머지않아 영유아 권리의 확립과 더불어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 보건복지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세이브더칠드런. (2012). **보육교사용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 서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5).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세종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어린이집 이해와 운영위원회 참여**. 서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2015). **2015 보육사업안내**. 세종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세종시: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2012). **좋은 교사되기 핸드북**. 서울: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소통과 이해의 보육**.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강사진 교육자료**.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함께 배워요,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1권, 2권**.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아동학대예방전문요원 양성교육**. 서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유네스코협동길라잡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학림학사. (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 권미경, 이순형(2010). **조기 해외 유학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적응 : 문화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인간발달학회지, 14(1).
- 손환희. (2009).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조지은. (2008). **자유선택활동에서 나타난 교사의 상호작용 양상**.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Janusz Korcak. (2002). **아누스 코르차크의 아이들**(노역희 역). 서울: 양철북.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



■ 기획·총괄

배현숙 (서울시보육담당관 과장)
고광현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장)
배동원 (서울시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주무관)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집필진

유정은 (인권활동가, 서울여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자문

유기정 (서울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최상국 (서울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한경숙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 팀장)
박은희 (새들어린이집 원장)

■ 감수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옹호팀 팀장)
이정란 (서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연수 (동양어린이집 원장)
소재진 (대우주어린이집 원장)
김연정 (서초구립 하나푸르니어린이집 교사)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보육교직원용)

발 행: 2015년 9월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 화: 02-772-9814~8
인쇄처: 디자인 나무
ISBN 979-11-85917-08-5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사전 승인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